

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구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150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9월 10일

제안자 :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, AI)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의료·복지·교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.
- 그러나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침해, 편견과 허위 정보의 확산,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. 이로 인해 기술 혜택의 불균형과 사회적 신뢰 저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나.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인공지능윤리 기반 구성 가이드라인 수립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행정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공지능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」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.
2. “인공지능윤리”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, 시민의 권익과 생명·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,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.
3. “인공지능사회”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·경제, 사회·문화,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,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인식개선,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, 자율규제의 실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공지능윤리 기반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, 문화,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구성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「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」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인공지능윤리의 준수·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
3.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4.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
2. 인공지능 산업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
3.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·법률적·기술적 전문지식

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(이하 “인공지능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위원회를 준용한다.

제7조(가이드라인)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행정지원 등) 시장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

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대학교,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공익성 및 윤리성”을 “공익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